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11782	2021. 08. 05.	2026. 01. 21.



정보공개서

(주)네모에스앤에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주)네모에스앤에스

<주 의 사 항>			
<p>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p> <p>「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p> <p>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p> <p>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p> <p>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p> <p>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p>			
가맹 본부 정보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498-11	
	전화번호	031-911-3088	팩스번호 031-911-6600
	담당부서(연락처)	031-911-3088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별첨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1)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네모 에스앤에스	네모스토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498-11(덕이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9.08.26	2009.09.01	박형수	031-911-3088	031-911-6600
	법인등록번호	110111-4166305	사업자등록번호	105-87-35066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대표 이사	박형수	네모스토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180,  (비공개)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박형수	031-911-3088	031-911-6600
감사	황재윤	네모스토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180,  (비공개)		
			박형수	031-911-3088	031-911-6600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1)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추가 설명
명칭	네모스토리지	네모스토리지는 개인/가정/기업에게 짐보관에 필요한 공간을 대여하는 도심속 개인창고/셀프스토리지 서비스상표입니다.
상호	네모스토리지 0000점	
상표 (서비스표)	네모스토리지	등록번호 : 4102890070000
광고	-	-
그 밖의 영업표지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으며 그 근거자료는 [별첨1]과 같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1,709,807	1,000,545	709,2621	1,089,831	-29,660	65,348
2023년	1,576,306	829,072	747,233	731,817	77,681	37,972
2024년	1,654,420	885,681	768,739	488,863	59,503	21,505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주)네모에스앤에스의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액 중 일부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1)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관련 임원	박형수	대표이사	2018.03.31. ~ 현재	대표	회사업무 총괄
비 관련 임원	황재운	감사	2018.03.31. ~ 현재	감사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원수 (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1	4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해당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1)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 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네모스토리지 (상표권)	39류	출원 : 2012.12.17. 등록 : 2014.05.22.	출원 : 제 2012-0042350호 등록 : 제 41-0289007호	(주)네모 에스앤에스	2034.05.22.

2)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3)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 [네모스토리지]를 시작한 날 : 2021년 9월 1일

2. [네모스토리지]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네모 에스앤에스	네모 스토리지	박형수	2021.09.01. ~ 현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498-11(덕이동)

3. [네모스토리지] 업종

영업표지	업종	
네모스토리지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서비스	참고/공간대여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0	8	2	13	11	2	13	11	2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1	1	0	1	1	0	1	1	0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9	7	2	12	10	2	12	10	2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네모스토리지] 가맹점 수

(단위:개)

사업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2년	6	2	0	0	0	8
2023년	8	3	0	0	0	11
2024년	11	0	0	0	0	11

6.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네모스토리지]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평균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개/천원, 부가세미포함)

지역	전년도말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하한		산출 가맹점 수
		총 매출액	면적(3.3m ²) 당 매출액	총 매출액	면적(3.3m ²) 당 매출액	총 매출액	면적(3.3m ²) 당 매출액	
전체	11	134,494	800	274,669	2,015	70,925	449	11곳 산정
서울	-	해당없음	-	-	-	-	-	-
부산	-	해당없음	-	-	-	-	-	-
대구	-	해당없음	-	-	-	-	-	-
인천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광주	-	해당없음	-	-	-	-	-	-
대전	-	해당없음	-	-	-	-	-	-
울산	-	해당없음	-	-	-	-	-	-
세종	-	해당없음	-	-	-	-	-	-
경기	10	131,823	745	274,669	1,204	70,925	449	10곳 산정
강원	-	해당없음	-	-	-	-	-	-
충북	-	해당없음	-	-	-	-	-	-
충남	-	해당없음	-	-	-	-	-	-
전북	-	해당없음	-	-	-	-	-	-
전남	-	해당없음	-	-	-	-	-	-
경북	-	해당없음	-	-	-	-	-	-
경남	-	해당없음	-	-	-	-	-	-
제주	-	해당없음	-	-	-	-	-	-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은 [매월 가맹점사업자가 보고한 매출]을 기준으로 **11개 가맹점**에서 산출한 매출액을 당사가 연간 평균 매출액으로 추정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영업개월 수가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가맹점의 매출액은 월 평균 매출액 산정 후 이를 연간 평균 매출액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사가 추정한 매출로 실제 가맹점에서 올린 매출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적_(3.3㎡)당 연간 평균 매출액은 [연간 평균 총매출액/평균 가맹점 면적_(㎡)*3.3] 산식으로 추정하였으며, 위 표에 기재된 상한과 하한 내역은 지역별 최고 매출과 최저 매출을 올린 매장의 매출액을 면적_(3.3㎡)당 매출로 환산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참고로, 실제 매장크기는 최저 약 80평부터 최고 약 273평 범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또한, 위 추정 매출액은 가맹점이 위치한 지역 및 상권, 실제 매장의 크기, 실제 운영한 영업개월 수, 가맹점사업자의 노력 등이 상이하므로 전국 평균 매장의 평균 매출액이 아니며, 귀하가 실제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8. [네모스토리지]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단위:개/일)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년	11	1,001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가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직전 사업연도 말 『네모스토리지』와 관련하여 광고 및 판촉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비공개)	40,136	 (비공개)	-
광고		(비공개)	40,136	 (비공개)	-

11.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가맹금예치제도 대신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맹계약 체결 이후 [서울보증보험(주)]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피보험인(보험계약자)	주식회사 네모에스앤에스	가맹본부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예치가맹금범위내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5개월 소요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네모스토리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최초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6,600				
가입비	5,500	계약 체결과 동시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① 영업 개시 이전까지 개 업지원, 자료제공 등의 서비스가 제공 시 해당 대가는 제외하고 반환 ② 영업 개시 이후 반환되 지 않음(소멸)	※단, 영업표지 사 용대가는 계약의 만 료시까지 일로 계산 하여 경과한 기간의 해당분의 금액은 소 멸, 잔여기간의 해 당분의 금액은 반환
최초교육비	1,100		교육 시작전에 계약해지	교육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당사는 별도의 보증금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구분	금액(단위: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6,600
가입비	5,500
최초 교육비	1,100

①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과 660만원이 보장되는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가맹금을 별도로 예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 1. 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천원, 부가세 미포함, 330m²(100평)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간판	가맹본부	5,000	5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7일 전	시공발주 전 계약해지	
내부 사인물	가맹본부	5,000	5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7일 전	시공발주 전 계약해지	룸번호, 배치도, 이정표등, 각종 POP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추후 지정	120,000	1,20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7일 전	공사발주 전 계약해지	
최초 공급 상품 비용	추후 지정	10,000		물품 공급 7일 이전	상품발주 전 계약해지	
보안시스템	협력업체	1,00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7일 전	시공발주 전 계약해지	매장 면적에 따라 금액이 추가될 수 있으며 금액지급 방식은 분납 등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가맹본부	3,000		가맹개설 전일까지	상품발주 전 계약해지	최초 각종 인쇄물 및 판촉물
	합 계	144,000				

- ① 별도공사비용 : 전기증설, 철거공사, 냉난방기 시설 (천정형, 벽걸이형), CCTV(방범), 소방설비 및 스프링클러 등은 별도비용이며 경우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 ②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③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자체시공.조달하거나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가맹본부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④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감독비로 3.3m² 당 [10]만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①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본부와 상담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원하는 점포를 파악 → 가맹본부에 통지와 협의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의 승인을 구함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①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당사의 사업마인드를 이해하는 사람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① [네모스토리지] 의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p>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p>
--	--

8)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 ①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V.8.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1,100 또는 평당 11,000원 중 높은 금액	매월 20일 까지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 총수 대비에 따른 분담금	매월 청구일	분담금 납부 후 1년간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광고 집행시	V. 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교육훈련비 (운영, 특별 교육비)	가맹본부	교육 종류에 따라 상이함	교육 실시 3일 이전	교육비 납부 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시행후	VIII.교육·훈련 에 대한 설명 참조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또는 추후 지정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VII.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자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액 X 연[15]%	지급기일 익일부터			

- ② 당사의 광고분담금이나 교육훈련비(운영, 특별교육비)는 일정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사전통지를 하고 실비 수준에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 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

구분(기준: 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 ▶ 당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취하지 않아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고객관리	고객상담 및 계약관리 상태점검, 표준가격 적용여부등	수시	문의: 가맹본부
시설관리	적정 온습도등 시설관리상태 및 물품보관 환경상태 확인	수시	문의: 가맹본부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①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

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① 귀하가 운영하는 해당 가맹사업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 받는 양수인은 당사에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V.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단,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을 원할 경우 신규에 해당하는 가맹비와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의 해당가맹사업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 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물건으로부터 당사의 브랜드 등 영업표지 일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가 제공한 모든 운영매뉴얼 및 양식, 보고서, 서신, 운영파일 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문서를 당사로 반환하여야 하고, 관련된 어떠한 사본이나 기록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가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종료 후의 조치	관련 계약조문
당사의 핵심 Know-how 사용금지	14조
상표, 상호 기타 일체의 영업표시의 사용 금지	14조
간판 및 디자인 등의 일체의 영업표시를 종료 후 7일 이내에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함	14조
임대물이 있을 경우 그 반환이 완료되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그 보상이 완료되어야 함	14조
각종 홍보 / 판촉 관련된 활동 중 당사의 상호 및 기타 유사한 안내문 삭제	14조
당 가맹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이를 삭제	14조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②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해당 없습니다.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네모스토리지]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우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체의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네모스토리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①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제시된 보관롬타입 및 할인정책등)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

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아래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의 “용역명” 과 동일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용역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시정요구 2회 위반 : 2회 이상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 ②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③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①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23.9.1.기준] (단위:원/월/부가세포함)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보관룸 규격	XS 타입	77,000	가격 변경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사전 공지함.	3개월 선결제 시 10%, 6개월 선결제 시 1개월, 12개월 선결제 시 3개월 할인, 15일 계약시는 월요금의 60% 부과
	S 타입	110,000		
	M 타입	176,000		
	L 타입	220,000		
	XL 타입	396,000		
	B&B 타입(120cm 이하)	11,000		
	B&B 타입(120cm 이상)	16,500		

- ②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①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공간을 대여하는 창고업/물품보관업종	네모스토리지	해당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①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소재지의 시/군/구/동으로 통계청 자료 직전년도 총인구수 30만 이하의 기준으로 상호 계약 시 협의된 지역 기준	계약 시 협의에 의해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①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① 당사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① 당사는 [네모스토리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①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① 당사의 가맹점의 영업지역은 외부 단독매장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영업지역 내에 유통집객시설(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등), 공항, 호텔 및 학원시설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상권은 별도의 상권으로 간주하여 영업지역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년	82	18	-	-

※ 당사는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직영점)을 제외, 자사 온라인몰 및 기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 관련 매출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당사는 온라인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단위:%)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년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 ① 해당 가맹사업의 최초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이후 재계약(갱신)

의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 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8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8조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8조
4.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8조
5. 당사의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8조
6.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8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①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에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십만원(₩100,000) X 계약 잔여기간입니다.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당사의 경영지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정을 거부한 경우 및 경영지도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13조 제1항
2. 가맹비, 교육비, 상품대금 등 금전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3조 제1항
3. 필수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3조 제1항
4. 당사의 동의 없이 영업양도나 승계, 담보제공, 사업장위치 변경한 경우	제13조 제1항
5. 당사와 합의 없이 영업시간이나 영업일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13조 제1항
6. 당사의 동의 없이 상호협의를하거나 약정된 광고나 판촉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제13조 제1항
7. 당사의 동의 없이 정해진 필수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로 가맹점 운영을 대신하는 경우	제13조 제1항
8. 노후화된 인테리어, 집기, 설비 등의 교체·보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제13조 제1항
9. 제품품질 불량 및 기타 점포운영 등에 관한 내용 등으로 소비자 클레임의 발생에 대하여 “가맹본부” 로부터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13조 제1항
10. “필수품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선택품목”의 품질기준을 준수를 위반한 경우	제13조 제1항
11.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나 경업금지의무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 제1항
12.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계약관계를 지속 시키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 제1항

- 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③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에도 명기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계약 즉시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13조 2항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제13조 2항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3조 2항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13조 2항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 2항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 2항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13조 2항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13조 2항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13조 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①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 당사자간의 서면으로 된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양당사자 쌍방의 서면 합의	제 32 조

- ② 당사의 협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 → 수정계약서(안) 검토 → 승낙여부 서면 통지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①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 들어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환매제도가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①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p>당사는 다음 모든 조건이 만족된 경우, 양도에 대한 승인을 비합리적으로 보류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및 당사의 공식지정업체에 대한 모든 금전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2. 영업양수인이 본 계약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의무를 인수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당사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 3. 양도일 전에 영업양수인 또는 매장의 관리자가 점포개시 전에 수료해야하는 교육을 완료한 경우 4. 영업양수인이 양도일 현재 당사의 신규 가맹점사업자의 선정조건, 인성, 사업경험, 재정능력에 부합한 경우 5. 양도하는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당사의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의 규정을 지키겠다고 서명하는 경우 6. 영업양수인이 교육비 등의 금전적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p>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p>	<p>양도문의 : 가맹본부</p>

②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①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상속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대리행사	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 서면으로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업무위탁	불가능			

②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①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네모스토리지]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일반인 등에게 공간을 대여하는 창고업/물품보관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 가맹본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① 당사는 [네모스토리지]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24시간	1년 / 365일 (일요일 /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고객 대응을 위해 평일은 10~19시 까지, 토요일은 10~15시 까지 인원이 상주해야 함)	문의:가맹본부

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가맹본부 또는 귀하가 요청할 경우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는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①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1명 이상	직접 근무	고객상담 및 계약, 시설관리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업무교육을 받은자	

② 가맹본부 또는 귀하가 요청할 경우 종업원 및 근무형태는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①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품질 (quality)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수시	가맹점관리팀	
서비스 (service)	담당자 매장 방문 → 서비스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수시	가맹점관리팀	
청결 (clean)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가맹점관리팀	

②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표를 사전에 제공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①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 및 지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수비용에 따라 분담	광고기획 → 가맹점사업자 50% 이상 동의 또는 광고 진행에 관한 약정 체결 → 가맹점사업자 분담분 산정, 분담금 통지서 발송 → 정해진 기일 에 납부	-
	브랜드 및 상품광고+가 맹점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수비용에 따라 분담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 행사	통상적인 전체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행사기획 → 가맹점사업자 70% 이상 동의 또는 판촉행사 진행에 관한 약정 체결 → 가맹점사업자 부담분 산정, 분담금통지서 발송 → 정해진 기일에 납부	70%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 자만을 대상으로 실시 가능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해당 없음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①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별 개별 판매촉진 및 광고 활동”을 위한 팜플렛, 전단, 리플렛, 카탈로그 기타 판촉물을 제작할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그 계획과 소재 등을 당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당사의 상호와 온라인 홈페이지 URL을 동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1)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2)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15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 ① 점포개설 후 계약해지에 책임이 있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약금을 지급하되 그 위약금은 다음과 같다.
: 일금 일십만원(₩100,000) × 계약 잔여월
- ② “가맹본부” 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의 임원이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 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1)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0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10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즉시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의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계약체결 30일 전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예상매출액산정서 제공	계약 약 7일전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	
보증보험가입	- 보증보험 가입	체결 후 약 7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50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49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48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2)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1)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 2) 당사자 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 1588-1490, 홈페이지 :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전항의 규정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당사 또는 귀하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1)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담 비용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p><분할지급 시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1)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 관리팀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 관리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 1) 당사는 [네모스토리지]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별도의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는 내역이 없습니다.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 1)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최초 교육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고객대응 및 고객관리교육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개업하기 이전 까지 이수하여야 함	필수교육
운영 교육	지역 영업기법 등 가맹점 운영 능력향상 교육	실습교육 집단 강의	교육실시 7일 전에 교육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필수교육
특별 교육	변경된 영업방침 등	실습교육 집단 강의	교육실시 7일 전에 교육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선택교육

[※ 운영교육과 특별교육은 개업 이후 교육으로 일정이나 기한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1)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비고
최초 교육	16H	1,100	최초 계약 시 이수
운영 교육	교육마다 상이	교육마다 상이	
특별 교육	교육마다 상이	교육마다 상이	선택교육

- 2) 운영교육과 특별교육은 개업 이후 교육으로 비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필요시 금액을 사전통지 합니다. 그 금액은 통상 교육에 필요한 실비수준입니다. 단, 상기의 교육훈련을 위한 숙박비, 교통비는 별도입니다.

3. 교육 · 훈련의 주체

- 1)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1) 당사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교육 불 이수 시 제재	관련 계약조문
개업교육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의 개설이 유예될 수 있음	제11조
당사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수료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됨	제14조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음	제9조

IV.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NO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네모스토리지 일산마두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29 대우로얄마트 동관 B1
2	경기	네모스토리지 고양화정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53-1 글로리아프라자 지하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4년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산정기준

(단위: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56,948	※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각 매장별 매출관리 통장 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별첨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제공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법」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다만,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